

		시 민			
문서번호	소방행정과-3172	담당자	인사팀장	소방행정과장	소방재난본부장
결재일자	2013. 1. 30.	이명우	김범기	진준호	01/30 조성완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이승일
방침번호		경리팀장			

-소방방재 전문인력 양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-
2013년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설치 운영계약 체결계획



2013. 1

서 울 소 방 재 난 본 부

- 소방방재 전문인력 양성 및 사기진작을 위한 -
서울시립대 계약학과 설치 · 운영 계약 체결계획

소방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직무 자질향상을 위해 서울시립대와 계약학과(소방방재학과) 설치·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소방재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.

□ 추진근거

- 시장방침 제511호('06.12.4) 「소방전문인력 양성 및 사기진작 방안」
- 소방방재본부장 방침 제2호('07.6.21) 「시립대 위탁교육 추진(계약체결) 결과 보고」
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2호
(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·운영)
- 「서울시립대학교 학칙」 제97조 내지 제105조(계약학과 설치·운영)

□ 그간 추진사항

- '06.12. 4 : 소방전문인력 양성 및 사기진작방안(시장방침 제511호)
- '07. 1. 8 : 관·학 교류 협약서(MOU) 체결(시립대 총장)
- '07. 5.15 :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체결(산학협력단장)
- '07. 8.21 : 2007년도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체결(산학협력단장)
- '07.12. 6 : 2008년도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체결(산학협력단장)
- '08.12. 4 : 2009년도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체결(산학협력단장)
- '09.12.30 : 2010년도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체결(산학협력단장)
- '10.12.31 : 2011년도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체결(산학협력단장)
- '12.01.19 : 2012년도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체결(산학협력단장)

□ 위탁교육 개요

- 계약학과 : 서울시립대학교 『소방방재학과』
- 교육기간 : 2013. 3 ~ 2017. 2 (4년)
- 교육인원 : 2013학년도 1학년 1개반 40여명 편성

※ 소방방재본부장 방침 제2호(2007.6.21) 「시립대 위탁교육 추진(계약체결)

결과 보고」에 의거 매년 기수별로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체결

- 등록금 : 2,800천원(신입생 등록금)
- 교육비 지원(신입생) : 1인당 1,400천원 ~ 1,680천원
 - 성적 평점 3.0이상 : 1,680천원(등록금의 60%)
 - 성적 평점 2.5이상 : 1,540천원(등록금의 55%)
 - 성적 평점 2.4이하 : 1,400천원(등록금의 50%)
- 선발방법 : 소방재난본부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결정 ⇒ 시립대 승인
- 위탁교육생 현황

년도별	계	2010	2011	2012	비고
인원	123명	46명 (4학년)	33명 (3학년)	44명 (2학년)	136명 (졸업생)

□ 예산편성 : 557,780천원

○ 편성내역

- 신입생 : 40명×1,400천원×1학기+40명×1,680천원×1학기=123,200천원
- 재학생 : 434,580천원
 - '10학번 : 1,500천원 × 47명 × 2학기 = 141,000천원
 - '11학번 : 2,034천원 × 35명 × 2학기 = 142,380천원
 - '12학번 : 1,680천원 × 45명 × 2학기 = 151,200천원

○ 예산과목 :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/사무관리비(100-201-01)

□ 위탁교육 계약

- 건 명 : 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
- 주요내용 : 위탁교육과정, 위탁생 선발, 수업, 학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계약방법 : 상호 협의된 계약서(안)을 2부 작성 체결, 각 1부 보관
- 계약일자 : 2013. 1.

※ 계약서(안) : [별첨1]

□ 위탁교육생 관리

-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 반납
 - 훈련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때
 - 특별한 사유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때 등

□ 향후추진 계획

- 2013. 2월 :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 및 선발 추천(소방재난본부)
- 2013. 2월 : 2013학년도 입학원서 제출(소방재난본부)
- 2013. 2월 : 면접 및 합격자 발표 (서울시립대)
- 2013. 3월 : 신입생 입학 및 개강 (서울시립대)

[별첨1]

계약학과 설치·운영 계약서(안)

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(이하“소방재난본부”라 한다)와 서울시립대학교(이하“대학”이라 한다)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, 제9조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·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은 소방재난본부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, 계약학과 설치·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과정 및 정원) ①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은 「고등교육법」상의 학사학위 과정으로 한다.

② 계약학과명, 학위과정, 교육기간, 정원은 다음과 같다.

입학년도	학 과	과 정	교 육 기 간	정 원
2013	소방방재학과	학사과정	2013. 3월 ~ 2017. 2월	50명

제3조(지원자격) 대학입학 자격이 있는 자 또는 3학년 편입자격이 있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에 근무 중인 자로 한다.

제4조(선발과 입학) ① 계약학과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천한다.

② 대학은 계약학과의 입학지원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할 허가를 한다.

③ 계약학과의 입학지원자 추천, 입학허가 기준과 절차는 대학의 학칙과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동 계약에 근거한 신입생 모집은 2013학년도 1회에 한한다. 편·입학은 여석이 있을 경우 대학의 학칙에 따라 실시하고 그 기간은 따로 정한다.

제5조(학급편성) 계약학과의 학급편성은 1개 학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교육내용 및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(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) 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대학의 학칙에 따르되, 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하여 교과과정을 개편 운용할 수 있다.

제7조(수업) ① 계약학과의 수업시설은 소방재난본부가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교육목적과 교과 특성상 대학내의 시설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소방재난본부는 시설사용 및 비용에 대한 별도 협의를 거쳐 대학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.

② 수업일시 및 수업시간은 학칙에 따르되, 대학과 소방재난본부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8조(수업의 지원 및 시설사용) ① 소방재난본부는 강의실 등 수업에 관한 시설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, 학생 생활지도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협력한다.

② 대학에서 수업을 실시할 경우에 소방재난본부는 수업운영에 필요한 강의시설 설치비 및 기자재 설치비와 그 운영비, 사무용품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한다.

③ 소방재난본부는 교수 및 강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학과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 요금을 면제해 준다

제9조(등록금) ① 계약학과 학생의 등록금은 대학의 학생 등록금에 현지교육비를 추가한 금액으로, 2013년도 등록금은 학생 1인당 **2,800,000**원으로 한다.

②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은 제1항 등록금액의 **100**분의 **50**이내로 하고, 현지교육비를 포함한 등록금을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소방재난본부에서 부담하는 등록금은 제1항 등록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, 현지교육비를 포함한 등록금을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.

④ 학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등록 학생 수는 30명으로 한다. 단 학생 수가 최소등록 인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인원으로 인한 등록금 결손액은 소방재난본부에서 보전한다.

⑤ 재학중인 학생이 자퇴 또는 타시도 전출시 이미 납입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

⑥ 다음연도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대학은 한 학기 전에 소방재난본부에 고지한다.

제10조(등록금의 징수방법) ① 대학은 매학기 개시일 15일전에 등록금 총액을 소방재난본부와 학생에게 고지하고, 소방재난본부와 학생은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을 대학에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.

제11조(재학 중 퇴직·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 폐지 등)① 재학 중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·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약정 기간 동안 소방재난본부에서 등록금의 50%를 부담하며,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생 자격으로 본다.

②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 재학생에 대하여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(부)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. 이때 재학생 및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.

제12조(학생의 신분)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대학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, 대학의 학칙을 적용받는다.

제13조(약정기간) 약정기간은 2013. 3. 1부터 2017. 2. 28까지로 한다.

제14조(기타사항)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재난본부와 대학이 협의하여 결정하고,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.

2013년 1월 일

서울소방재난본부

소방재난본부장 조성완

서울시립대학교

산학협력단장 박경완
